

대전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8가단218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성낙근, 이애린

피 고 1. B

2. C

피고 C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680,772원 및 그 중 10,837,264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접수 제2417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5,019,723원 및 그 중 2,019,723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3,914,440원 및 그 중 12,628,974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9. 21. 970만 원을 이자를 연 60%(월 5%), 변제기한을 바로 다음날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1. 12. 380만 원을 재차 대여하면서 위 2015. 9. 21.자 970만 원

대여금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합계 1,000만 원, 변제기한을 2015. 12. 12.까지, 이자를 연 60%(월 5%)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5. 10. 13.부터 2017. 10. 13.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1,49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7. 8. 피고 B에게 월 500,000원[연 60%(월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원금상환을 보장받기로 하여 FX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위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6. 8. 8.부터 2018. 1. 9.까지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1) 3) 원고는 2017. 1. 10.부터 2017. 10. 10.까지 계주인 피고 B에게 계금 불입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위 계금을 ‘이 사건 계금’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금 중 2017. 11. 10. 400만 원, 2017. 12. 2.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2)

나. 피고 B의 부동산 증여

1) 피고 B은 2017. 12. 20. 별 다른 적극재산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9,798,550원이다.

2) 한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2.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청구금액 11,000,000원, 채권자 E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가. 이 사건 대여금

원고는 2015. 9.경 970만 원, 2015. 11.경 37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B과 2015.

11.경 대여금을 합계 1,000만 원, 이자를 연 60%, 변제기한을 2015. 12. 12.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2015. 10. 13.부터 2017. 10. 13.까지 합계 1,49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연 이자율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연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 B의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에 충당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21. 3. 30.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2,019,723원, 이자 1,747,199원이 된다.

나. 이 사건 투자금

1)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판단할 때에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토대로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FX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교부가 있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의 원금 반환을 약속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에 관하여 매월 수익으로 월 5%인 1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온 점, 원고가 피고에게 FX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 외에 피고의 FX 투자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금은 그 법적 성질이 교부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6. 7. 9.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투자금으로 이자(수익)를 연 60%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B이 2016. 8. 8.부터 2018. 1. 9.까지 대여금 중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연 이자율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연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 B의 변제금을 이 사건 투자금에 충당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투자금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21. 3. 30. 기준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은 8,817,541원, 이자는 7,096,309원이 된다.

다. 이 사건 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합계 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미반환한 계금 합계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680,772원(= 2021. 3. 30.자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2,019,723원, 이자 1,747,199원 + 2021. 3. 30.자 기준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 8,817,541원, 이자 7,096,309원 + 계금 11,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금의 각 원금의 합계 10,837,264원(= 2,019,723원 + 8,817,541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에서 약정이자율인 연 25%의, 계금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투자금, 계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이 사건 투자금의 법적성질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투자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투자금의 법적성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투자금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것이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각 금전 채권을 가지고, 이는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279,597,100원인데 반하여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44,000,000원(더욱이 채무자는 피고 C이어서 피고 B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은 11,000,000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의 채권자인 F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F에 의하여 개시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인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이며 피고 B의 채권자들이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등 집행을 저지하고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방법인 원물반환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G 대 207.6㎡

2. 위 지상

[도로명주소] 대전 대덕구 H

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및슬래브위기와지붕 2층 주택, 지하, 차고

1층 97.62㎡

2층 67.35㎡

지하 39.08㎡. 끝.

별지 2

순번	일 시	대여금	대여금합계	이자율	이자	변제액	총당후원금
1	2015.09.21	9,700,000	9,700,000	연 25%			
2	2015.10.13				152,808	3,300,000	6,552,808
3	2015.11.12		6,552,808		134,647	300,000	6,387,455
4	2015.11.12	3,800,000	10,187,455				10,187,455
5	2015.12.12		10,187,455		209,331	500,000	9,896,786
6	2016.01.12		9,896,786		209,915	500,000	9,606,701
7	2016.02.12		9,606,701		203,421	500,000	9,310,122
8	2016.03.17		9,310,122		216,219	500,000	9,026,341
9	2016.04.12		9,026,341		160,304	500,000	8,686,645
10	2016.05.12		8,686,645		178,005	500,000	8,364,650
11	2016.06.13		8,364,650		165,860	500,000	8,047,484
12	2016.07.12		8,047,484		159,411	500,000	7,706,895
13	2016.08.12		7,706,895		163,192	500,000	7,337,087
14	2016.09.12		7,370,087		156,061	500,000	7,026,148
15	2016.10.12		7,026,148		143,978	500,000	6,670,126
16	2016.11.12		6,670,126		141,239	500,000	6,311,365
17	2016.12.12		6,311,365		133,642	300,000	6,145,007
18	2017.01.12		6,145,007		126,060	500,000	5,771,067
19	2017.02.13		5,771,067		126,489	500,000	5,397,556
20	2017.03.14		5,397,556		107,212	500,000	5,004,768
21	2017.04.14		5,004,768		99,410	500,000	4,604,178
22	2017.05.12		4,604,178		94,606	500,000	4,168,784
23	2017.06.12		4,168,784		88,515	500,000	3,757,299
24	2017.07.12		3,757,299		77,205	500,000	3,334,504
25	2017.08.13		3,334,504		73,085	500,000	2,907,589
26	2017.09.12		2,907,589		59,745	500,000	2,467,334
27	2017.10.13		2,467,334		52,389	500,000	2,019,723
28	2017.10.14 ~ 2021.03.30		2,019,723		1,747,199		

별지 3

순번	일 시	투자금	잔존금	이율	이자	변제액	총당후원금
1	2016.07.08	20,000,000	20,000,000	연 25%			
2	2016.08.08				438,356	1,000,000	19,438,356
3	2016.09.08		19,438,356		412,732	1,000,000	18,851,088
4	2016.10.08		18,851,088		387,351	1,000,000	18,238,439
5	2016.11.08		18,238,439		387,255	1,000,000	17,625,694
6	2017.01.09		17,625,694		748,488	1,000,000	17,374,182
7	2017.02.08		17,374,182		357,004	1,000,000	16,731,186
8	2017.03.08		16,731,186		320,872	1,000,000	16,052,058
9	2017.04.11		16,052,058		373,815	1,000,000	15,425,873
10	2017.05.09		15,425,873		295,839	1,000,000	14,721,712
11	2017.06.08		14,721,712		302,501	1,000,000	14,024,213
12	2017.07.10		14,024,213		307,380	1,000,000	13,331,593
13	2017.08.09		13,331,593		273,937	1,000,000	12,605,530
14	2017.09.08		12,605,530		259,018	1,000,000	11,864,548
15	2017.11.09		11,864,548		495,711	1,000,000	11,360,259
16	2017.12.08		11,360,259		233,429	1,000,000	10,593,688
17	2017.12.26		10,593,688		130,607	1,000,000	9,724,295
18	2018.01.09		9,724,295		93,246	1,000,000	8,817,541
17	2018.01.10 ~ 2021.03.30		8,817,541		7,096,309		

1) 한편, 이 사건 투자금 변제와 관련하여 별지 3 기재 중 원고는 피고 B의 2017. 12. 8.자 100만 원 변제, 2017. 12. 26.자 100만 원 변제에 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2. 15. 100만 원, 2018. 3. 15.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중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입하였다는 계금 400만 원, 그 외 원고에게 지급한 1,130만 원 합계 1,53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증거로 인정되는 900만 원의 변제만을 사실로 인정한다.

3) 다만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에 우선변제력 및 대항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사실인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